



제316회 정례회
2012. 12. 13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미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11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정부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, 2011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을 제정 공포함.(2012. 3. 16 시행)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3조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함.
-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, 공무원의 교육,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분석평가 대상에 도지사 제·개정조례 및 규칙,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, 세출예산 단위사업 외에 “성별영향분석평가

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”을 포함(안 제5조)

- 분석평가 고려사항으로 성별통계, 성별수혜분석,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,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(안 제6조)
- 매년 평가결과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함(안 제8조)
-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명시(안 제9, 10조)
- 성인지 감수성 및 분석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(안 제12조)
- 분석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·단체 위탁으로 소속기관 등에 자문 제공 가능토록 함.(안 제13조)
- 분석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분석평가에 관련된 정보수집·보급, 분석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및 분석평가와 관련한 정보지원체계 구축·운영을 의무화 함.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에 필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시행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, 도정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추진 경과
 - 유관기관과의 조례제정 간담회 진행(8.23)
 - 참석인원 : 6명(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외 5명)
 - 조례 초안 작성(8.24 ~ 9.12)

- 민·관 간담회 진행(9.14)
 - 참석인원 : 10명(외부 전문가 3명, 집행부 3명, 위원 4명)
- 집행부 최종 의견수렴 및 비용추계서 작성(10.11)
- 도의회 입법팀 검토 및 협의(10.12)
- 입법예고(10.17 ~ 11. 5)

나. 조례 제정 현황

- 광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
(광역 3, 기초 8)
- ※광역자치단체 : 경기(2012-08-01) 대구(2012-11-12), 광주(2012-05-01)

다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성인지 감수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 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의 개입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,
-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되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 및 충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, 예산수립 및 조례 제·개정에서 있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.
- 또한, 분석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·단체 위탁으로 소속 기관 담당자 교육 및 분석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문 제공을 조문화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